

창원지방법원 2015. 8. 21 선고 2014가단6421 판결 [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16. 9. 21 선고 2015나8296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15. 8. 21 선고 2014가단6421 판결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망 A의 소송수계인 B

피 고 C종회

변론 종결 2015. 7. 17.

판결 선고 2015. 8. 2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76858분의 73527 지분에 관하여

창원지방법원 2004. 7. 5. 접수 제50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같은 법원 2005. 9. 20. 접수 제83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E 임야 198,347㎡(이하 '분할 전 E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69. 1. 16. F, G, H, I 앞으로 1965. 5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(공유자 지분 각 1/4), 이후 분할 전 E 토지 중 공유자 지분 51293/198347에 관하여 1979. 11. 13. 창원종합위락시설건설추진회 앞으로 1979. 11. 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나. 분할 전 E 토지는 1988. 12. 13. 창원시 의창구 J(이하 'J'이라고만 한다) E 임야 175,467㎡와 K 임야 22,880㎡로 분할되었고, 위 K 임야 22,880㎡는 같은 날 L 임야 22,880㎡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.

다. E 임야 175,467㎡ 중 G 지분 전부(367635/1983470 지분)에 관하여 2004. 7. 5. 피고 앞으로 2003. 11. 15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, E 임야 175,467㎡ 중 F 지분 전부(367635/1983470 지분)에 관하여 2005. 9. 20. 피고 앞으로 2003. 11. 15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이후, E 임야 175,467㎡는 2006. 5. 2. 별지 목록 순번 1,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12 내지 1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D은 일자불상경 M에게 분할 전 E 토지를 매도하였고, 망 A는 부친인 N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N의 명의를 빌려 O, P, Q, R, S, F(이하 망 A와 위 6인을 통틀어 '종원 7인'이라 한다)와 함께 1959년경 M의 대리인인 T과 사이에 분할 전 E 토지를 대금 합계 94,500원에 각 1/7 지분씩

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M은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.

망 A는 1960년경 N와 사이의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고, 종원 7인은 1960년경 피고에게 분할 전 E 토지 중 상부에 해당하는 1/2 지분을 대금 70,000원에 매도하였다. 그 후 종원 7인은 1969년 1월경 F, G에게 분할 전 E 토지 중 자신들의 공유지분을 각 1/28 지분씩 명의신탁하였고, 피고는 그 무렵 H, I에게 분할 전 E 토지 중자신의 공유 지분을 각 1/4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1969. 1. 16. 분할 전 E 토지 중 각1/4 지분에 관하여 F, G, H,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종원 7인과 피고는 1979. 11. 8. 창원종합위락시설건설추진회에게 분할 전 E 토지중 51293/198347 지분을 매도하였고, 이로써 분할 전 E 토지 중 망 A의 공유지분은 지분이 되었으며, 망 A가 F, G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은 각73527/138842973527/2776858 지분이 되었다.
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. 7. 1. 시행되고,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가 마쳐지지 않음에 따라 망 A와 F, G 사이에 체결된 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었고, 분할 전 E 토지 중 각 73527/2776858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F,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망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M에 대하여 분할 전 E 토지 중 73527/13884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, M은 일자불상경 매매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, D은 분할 전 E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분할 전 E 토지 중 73527/1388429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.

망 A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U, V, W, X, Y{이하 이들을 통틀어 '원고(선정당사자) 등'이라 한다)는 M에 대하여 가지는 분할 전 E 토지 중73527/13884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M, D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분할 전 E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73527/2776858 지분에 관하여 위 1의 다.항 기재와 같이 마쳐진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성

가. 피고의 본안전항변

망 A를 비롯한 종원 7인이 분할 전 E 토지를 매수한 바 없고, 망 A는 분할 전 E토지 중 73527/13884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바 없으므로, 원고(선정당사자) 등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M, D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,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14339 판결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(선정당사자)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A를 비롯한 종원 7인이 1959년경 M의 대리인인 T과 사이에 분할 전 E 토지를 각 1/7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망 A가 M에 대하여 분할 전 E 토지 중 73527/13884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망 A의 M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망A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(선정당사자) 등이 M의 D에 대한 권리 및 D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순차로 대위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(M의 D에 대한 권리유무 및 D의 피고에 대한 권리 유무는 별론으로 한다),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세진

선 정 자 명 단

1. 망 A의 소송수계인 B
 2. 망 A의 소송수계인 U
 3. 망 A의 소송수계인 V
 4. 망 A의 소송수계인 W
 5. 망 A의 소송수계인 X
 6. 망 A의 소송수계인 Y
- 끝.

목 록

1. 창원시 의창구 E 입야 99,000㎡
2. Z 입야 76,467㎡
3. L 체육용지 2,816㎡
4. AA 체육용지 9,021㎡
5. AB 체육용지 4,203㎡
6. AC 체육용지 3,117㎡
7. AD 체육용지 3,646㎡. 끝.